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 안내문



HILLSTATE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의거 계약체결 전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 등을 안내 드리오니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신 서류의 검수 및 전산 검색 등을 통해 적격한 당첨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 혼잡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시간대별 접수건이 제한되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문예약 장소 :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홈페이지(<http://hillstate-cd-central.co.kr>)
 - 방문예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및 정당계약 체결 방문 시 견본주택 혼잡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본인 1인에 한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안내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정당계약 기간
8/29(화)	8/31(목) ~ 9/6(수) [10:00 ~ 17:00]	9/12(화) ~ 9/15(금) [10:00 ~ 17:00]
당첨자(동호수) 확인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장소 :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장소 :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 당첨자 유의사항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의뢰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제출한 입주대상자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서류를 확인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7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며, 소명기간 내 해당 부적격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전산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기타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를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서류접수기간(2023.08.31(목)~2023.09.06(수)/7일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 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3.08.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입주대상자의 청약 신청 내역과 당첨 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을 본인이 직접 소명하여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877-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탈자 및 오해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유의사항 안내

- 01** 계약 체결 전 서류제출 및 전산검색을 통해 적격한 당첨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정당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서류 미제출 및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02** 건보주택 혼합방지를 위하여 서류제출 및 정당계약 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운영되며, 가급적 본인 1인에 한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방문이 가능하나, 방문 예약 시 당첨자의 성명 및 연락처로 예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 당첨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제반 서류 제출 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8.11.)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04**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 방문 전, 아파트 공급대금 1차 계약금(1,0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10%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수분양자)가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납부지연가산세 중 인지세법 제8조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세액

구분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계약금 납부 계좌

구분	계약금	납부계좌
분양대금 계약금 (1차)	10,000,000원	Sh수협은행 1010-2395-3881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10%)	84A 1,078,000원	Sh수협은행 1010-2395-3933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84B 954,000원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10%)	선택 품목에 따라 상이	Sh수협은행 1010-2395-3933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의 정확한 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분양대금의 경우 상기 계좌로 납부되지 않을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보주택 현금수납 절대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101동 1304호 홍길동 → 1011304홍길동)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탈자 및 오해 소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8.11)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사본	청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당첨자 본인 확인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당첨자격 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본인발급분)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관계, 발생일, 변동사유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청약자 및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단신부임의 경우 입증서류 별도 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자료(소득증빙서류 및 자산보유기준 안내 참조) ※ 직계존속의 경우 1년 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가구원수로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 서류 안내 참고하여 발급
부동산 소유현황 (추첨제 당첨자)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본인, 세대원 전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안내 참고하여 발급	
건본주택 비치 양식	청약자	자격확인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추가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관계, 발생일, 변동사유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의 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임신의 경우,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그 외 사업주체 요청 서류	해당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사업주체에서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일체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당첨자격확인 위임용(본인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발급시 "세대주성명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의성명, 주민번호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하시기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서류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877-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타자 및 오해 소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 서류 안내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속 근무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직인 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기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②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③ ①, ② + 근로자인 경우: ①, ② 해당 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등기소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등	※ 개인사업자 기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②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원본, 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등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무직자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③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소득이 없는 경우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소득신고사실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입증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 확인제출 서류 안내

해당자격	자산보유 확인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① ② 인터넷 등기소
	해당자	① 공동(개발)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의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주민센터 ③ 위택스, 이택스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전체 화면 캡처) ② 지방세 세무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인터넷 등기소 ② 주민센터

■ 서류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877-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탈자 및 오해 소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